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

우 110-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146-1 /전화 (02)739-3141~2 /전송 738-3895

문서번호 수개 67010 -

시행일자 1997. 5. . (년)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취급		단 장	국무총리
보존			
부단장			
부 장		총괄심의관	
과 장			
기 안	신진수		협조

제 목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(국무총리지시 제 1997-10 호)

1. 상수원의 보호·관리는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상수원의 주오염원인의 하나인 가두리양식장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특별지시하니 각부처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가두리양식장의 신규 설치는 불허할 것

※ 이와관련 「호소수질관리법」이 제정될 예정임

나. 충주, 춘천, 소양등 상수원이용댐 또는 취수장 상류수계의 가두리양식장은 기간만료시 면허연장은 일체 불허할 것

- 면허만료시는 법령기간내에 시설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할 것

다. 면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가두리양식장은 월 1회이상 실태조사를 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면허취소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그결과를 수질개선기획단에 보고할 것

라. 가두리양식장의 수질오염에 대한 감시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할 것

2. 아울러 관계부처는 첨부된「부처별 세부실천계획」(지방자치단체 및 수면관리자관련 사항 포함)을 수립·이행하여 매분기별로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으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.

국 무 총 리

수신처 : 내무부, 통상산업부, 해양수산부, 농림부, 환경부, 건설교통부

〈붙 임〉

關係部處別 細部實踐 計劃

세부 실천계획	주관부처	협조부처
1. 호소수질관리법 제정 ※ 법시행시기 단축여부 검토	환경부	
2. 가두리양식장 및 낚시터		
- 면허기간 만료 가두리양식장 연장 불허 및 철거조치	해수부, 수면관리자,지자체	건교부,환경부, 통산부,농림부
※ 대상 : 취수장(예: 한강 잠실수중보, 낙동강 물금, 금강 부여, 영산강 몽탄등) 상류수계 전체		
- 수질오염 조사후 법령위반 행위 행정 제재조치	관계부처 합동, 지자체	수면관리자
- 사료공정규격 개정검토	해수부	
- 수면사용 조건부 동의사항의 이행실태 점검	수면관리자	
3.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절차 개선	환경부	
4.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개정 검토 - 면허기간, 절차, 어업제한등	해수부	

세부 실천과제	주관부처	협조부처
5. 호소별 수질관리 책임자 임명 및 카드비치 관리	수면관리자, 지자체	환경부
6. 댐관리규정 제·개정검토 - 구체적인 수면관리대책 마련	건교부, 통산부, 농림부	
7. 호소내 부유 쓰레기 처리대책 ※ 홍수시는 재난관리비 지원검토	수면관리자, 지자체	환경부,내무부
8. 호소내 유도선 수질오염방지대책	내무부, 지자체	환경부
9. 댐(호소) 주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기준 설정	환경부	